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27 호 2022. 1. 27.(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1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4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6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4호[도시계획시설(도로 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6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3-28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9호[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입안 및 열람공고] .....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1호[도시관리계획(매곡중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4호[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50호[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0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1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1. 21.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전주 5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12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3.50m<sup>2</sup>
    - 2) 영구: 0.64m<sup>2</sup>
  - 나. 기 간
    - 1) 2022. 1. 21. ~ 2022. 1. 22.
    - 2) 2022. 1. 23. ~ 2026.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1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김동화 외 1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53, 106동 401호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1843, 1041-95번지	하천의 명칭	○ 신명천
점용 내용	○ 진출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잡석포장)	점용 면적	○ 계속: 12m <sup>2</sup>
점용 기간	○ 계속: 2022. 1. 27.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24호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당초) 59,174m<sup>2</sup>  
**(변경) 59,355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 5. 사업기간 : 2014. 08. 28.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합 계				당초 : 59,174 변경 : 59,355	-	면적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편입면적 104-2번지 제외)
1	신명동 산30	임	당초 : 37,586 변경 : -	당초 : 11,595 변경 : -	이O현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중구 ***로 **, ***호(태화동)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104-10		당초 : - 변경 : 11,595	당초 : - 변경 : 11,595		
2	신명동 104-7	임	당초 : 35,511 변경 : 35,511	당초 : 35,511 변경 : 35,511	고O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3	신명동 104-4	임	당초 : 8,022 변경 : 8,022	당초 : 8,022 변경 : 8,022	고O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4	신명동 104-2	답	당초 : 260 변경 : 0	당초 : 260 변경 : 0	김O이	남구 **동 1***
5	신명동 104-6	임	당초 : 0 변경 : 1,740	당초 : 0 변경 : 399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6	신명동 산1-3	임	당초 : 1,732 변경 : 1,732	당초 : 1,649 변경 : 1,732	고O숙	전라북도 **시 ***길 **,***동 ***호 (**동,*****)
7	신명동 산1-5	도	당초 : 1,843 변경 : 0	당초 : 1,360 변경 : 0	국토부	
	104-11	도	당초 : 0 변경 : 1,374	당초 : 0 변경 : 1,374		
8	신명동 산1-7	임	당초 : 590 변경 : 0	당초 : 553 변경 : 0	국토부	
	104-12	임	당초 : 0 변경 : 554	당초 : 0 변경 : 554		
9	신명동 산27-3	도	당초 : 160 변경 : 160	당초 : 156 변경 : 160	국토부	
10	신명동 산28-1	구	당초 : 4,106 변경 : 4,106	당초 : 68 변경 : 8	농림부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2-126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비고
일반용지	라벨용지		
46원/매 (A4용지)	218원/매 (A4라벨용지)	$(1,000\text{원} \times \text{디스크개수}) + (23\text{원} \times \text{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
  - 나. 명칭: 북구 중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8호선 외 2개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592호) 조성공사] 사업
3. 사업면적 : 15,975.5㎡
  - 가. 도로

규 모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3	438	12.5	278	3,311.1	변경없음
대로	3	38	12	323	4,705.2	변경없음
중로	2	549	15~18	342	5,384.4	변경없음
소계				943	13,400.7	변경없음

## 나. 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592	녹지	북구 중산동 81-4 일원	2,574.8	변경없음

## 4. 변경사유

가. 대-38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 반쪽도로개설 중 기존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이격되어 시공되어있어 차로폭원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보도를 7.0m에서 6.3m로 축소하여 재시공함에 따른 변경

나. 기타 공사 중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변경 (가로수 간격 및 우·오수 추가 시공)

## 5. 사업시행자

가. 성명: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차기환

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신천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3. 21. ~ 2022. 6. 30.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참조

9.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10.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중산동	57-1	답	192.0	1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	중산동	58-1	전	32.0	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	중산동	60	답	50.0	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	중산동	61-5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	중산동	61-10	전	76.0	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	중산동	61-11	전	61.0	6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	중산동	62-1	대	39.0	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	중산동	63-4	답	200.0	2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	중산동	63-5	답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	중산동	63-13	답	228.0	22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	중산동	63-14	답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	중산동	63-15	답	394.0	39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3	중산동	63-1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4	중산동	63-20	답	299.0	29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5	중산동	77-1	과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6	중산동	78-2	과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7	중산동	78-3	과	450.0	4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8	중산동	78-4	과	364.0	3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9	중산동	81-3	답	582.0	58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0	중산동	81-4	답	279.0	2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1	중산동	81-5	답	100.0	1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2	중산동	82-5	도	68.0	6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3	중산동	82-6	도	48.0	4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4	중산동	82-8	답	45.0	4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5	중산동	82-9	답	18.0	1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6	중산동	82-10	답	60.0	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7	중산동	82-11	답	84.0	8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8	중산동	83-3	대	125.0	12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29	중산동	83-7	대	272.0	27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0	중산동	83-8	대	183.0	18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1	중산동	83-10	대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2	중산동	83-11	대	105.0	10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3	중산동	83-13	대	26.0	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4	중산동	86-6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5	중산동	86-9	전	267.0	26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6	중산동	86-10	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7	중산동	86-11	전	108.0	10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8	중산동	86-12	전	202.0	20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39	중산동	86-14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0	중산동	87-3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1	중산동	87-4	도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2	중산동	87-6	전	139.0	1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3	중산동	87-7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4	중산동	88-7	과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5	중산동	88-16	과	9.0	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6	중산동	88-17	대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7	중산동	88-19	도	10.0	1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8	중산동	94-6	입	254.0	25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49	중산동	94-7	입	116.0	1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0	중산동	94-9	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1	중산동	95	대	69.0	6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2	중산동	95-1	대	121.0	1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3	중산동	96-31	과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4	중산동	1185-16	도	30.0	3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5	중산동	1185-17	도	24.0	2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6	중산동	1185-19	도	16.0	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7	중산동	1185-20	도	26.0	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8	중산동	1185-22	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59	중산동	1185-23	도	21.0	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0	중산동	1185-24	도	73.0	7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중산동	1186-20	구	33.0	3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2	중산동	1186-21	구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3	중산동	1186-23	구	52.0	5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4	매곡동	470-10	답	41.0	4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5	매곡동	47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6	매곡동	471-10	답	136.0	13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7	매곡동	471-11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8	매곡동	471-12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69	매곡동	472-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0	매곡동	479-2	유	3.0	3.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71	매곡동	479-1	유	97.0	9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2	매곡동	480-4	답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3	매곡동	480-5	과	803.0	80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4	매곡동	481-4	전	79.0	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5	매곡동	481-5	전	640.0	6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6	매곡동	48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7	매곡동	482-4	전	260.0	2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8	매곡동	482-5	전	92.0	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79	매곡동	482-6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0	매곡동	482-7	전	7.0	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1	매곡동	483-2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2	매곡동	483-8	전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3	매곡동	483-31	도	95.0	95.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84	매곡동	483-10	전	55.0	5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5	매곡동	483-32	전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6	매곡동	483-12	전	24.0	2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7	매곡동	483-18	전	144.0	14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8	매곡동	483-19	전	51.0	5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89	매곡동	483-20	전	19.0	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0	매곡동	483-22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1	매곡동	483-23	전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2	매곡동	483-24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3	매곡동	483-25	전	156.0	1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4	매곡동	483-27	전	31.0	3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5	매곡동	483-29	전	6.0	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6	매곡동	483-30	전	5.0	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7	매곡동	484-1	답	250.0	2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8	매곡동	485-18	답	119.0	1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99	매곡동	485-2	답	264.0	2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0	매곡동	485-19	도	1,218.0	1,218.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1	매곡동	485-14	답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2	매곡동	485-15	답	323.0	32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3	매곡동	485-17	답	129.0	12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4	매곡동	496-36	답	16.0	16.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5	매곡동	496-37	답	12.0	12.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6	매곡동	497-7	답	118.0	118.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7	매곡동	497-3	답	15.0	1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08	매곡동	498-9	도	732.0	732.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09	매곡동	499-8	답	447.0	44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0	매곡동	500	답	7.0	7.0	울산광역시					변경 없음
111	매곡동	500-10	답	234.0	2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2	매곡동	500-2	답	58.0	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3	매곡동	826-47	구	153.0	15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4	매곡동	826-41	구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5	매곡동	826-43	구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6	매곡동	826-45	구	158.0	1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7	매곡동	832-21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18	매곡동	832-2	도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복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19	매곡동	832-14	도	58.0	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0	매곡동	832-15	도	52.0	5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1	매곡동	832-17	도	41.0	4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2	매곡동	832-19	도	23.0	2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3	매곡동	833-18	도	176.0	1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4	매곡동	833-19	도	125.0	12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125	매곡동	833-15	도	30.0	3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변경 없음
<b>합 계</b>				15,985.0	15,985.0						변경 없음
<b>확정측량면적</b>					<b>15,975.5</b>						변경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6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8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30-5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3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83호선)사업
  - 나. 명 칭: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가. 면 적 : 1,844.5m<sup>2</sup>
  - 나. 규 모 : B=6.0m L=0.186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9호

#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우리 구 중산동 1166-4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안 및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4	8~13	국지 도로	409	광로3-3	중산동 1166-122	일반 도로		'18. 5. 3. 울(북)고107호	
변경	소로	1	54	8~14	국지 도로	409	광로3-3	중산동 1166-122	일반 도로		'18. 5. 3. 울(북)고107호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4	소로1-54	• 노선 폭원변경 - (B=8~13m→8~14m)	• 우회전차로 공간확보에 따른 도로폭원 및 노선일부 변경

##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45	소공원	소공원	북구 중산동 1166-49번지 일원	570	감 116	454	'20. 12. 24. 울(북)고245호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5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공원 구역변경 - (A=570m<sup>2</sup>→454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1-54호선 도로폭원 및 노선일부 변경에 따 른 소공원 구역변경</li> </ul>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22. 1. 27. ~ 2022. 2. 10.(14일 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5. 열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41-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1호

# 도시관리계획(매곡중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092호(‘21. 8. 26.)로 입안·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매곡중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매곡중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구분	변경 내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3-44 → 소로2-A호선 (B=6m→8m: 폭원 확장)</li> </ul> </li> <li>•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호 주차장 (A=800㎡→890㎡: 증90㎡)</li> <li>- 361호 어린이공원 (A=3,341㎡→3,430㎡: 증89㎡)</li> <li>- 104호 공공공지 (A=536.6㎡→474.0㎡: 감62.6㎡)</li> </ul> </li> </ul>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22. 1. 27. ~ 2022. 2. 10.(14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4. 열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41-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44호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각 조례 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 정비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praise34@korea.kr

## 6. 기타사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서명)</p> <p><b>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b></p>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여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하고, 같은 조

중 “동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를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의3”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8조”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1조(「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

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3조(「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6조(「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7조(「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8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 ----- ----- ----- ----- -----.</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 ③ (생략)</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생략)</p>	<p>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생략)</p>	<p>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 ② (현행과 같음)</p>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 7102)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 ----- ----- -----.</p>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 7102)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별표 2</u>,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별표 3</u>과 같다.</p> <p>[별표 3] <b>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b></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과</th> <th>위임사무명</th> <th>근거법령</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총무과</td> <td>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td> <td>「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td> <td></td> </tr> </tbody> </table>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u>동장</u>----- ----- ----- ----- ----- ----- ----- ----- -----</p> <p>제2조(위임사항) ----- ----- ----- ----- ----- ----- ----- ----- -----<u>별표 2</u>와 같다.</p> <p>&lt;삭 제&gt;</p>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 7102)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1. 2. (생략)</p> <p>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 제130조-----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 ----- ----- -----</p> <p>「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8급 박지아(☎ 710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노은정(☎ 7131)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78조, ----- ----- ----- ----- ----- ----- -----.</p>
<p>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78조-----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제출범위)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u>법 제15조</u>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12조(제출범위)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법 제19조</u>----- ----- ----- -----.</p>
<p>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p>	<p>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p>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1. 2. (생략)

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16조(공포문) ① ~ ②(생략)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  
-----  
-----

법 제148조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16조(공포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제6항

법 제32조제6항

제18조(공포방법)

법 제32조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노은정(☎ 7131)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 <u>조제2항</u> ----- ----- ----- ----- -----

※ 업무담당(담당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7급 강민경(☎ 77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 ----- -----.</p>

※ 업무담당(담당자) : 회계담당관 행정7급 우효진(☎ 7312)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생략)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 업무담당(담당자) : 주민소통과 행정8급 최자윤(☎ 7264)

## 울산광역시 복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p>

※ 업무담당(담당자) : 주민소통과 행정8급 최자윤(☎ 726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 업무담당(담당자) : 주민소통과 행정8급 최자윤(☎ 7264)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p>

※ 업무담당(담당자) : 주민소통과 시설8급 강종민(☎ 7232)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p>

※ 업무담당(담당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채영(☎ 7332)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44조</u> 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u>제161조</u> ----- ----- ----- ----- -----

※ 업무담당(담당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강정(☎ 7333)

## 울산광역시 복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업무담당(담당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김경림(☎ 7336)

## 울산광역시 복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 ① ~③ (생략) ④ 수탁자의 선정,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위탁)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

※ 업무담당(담당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시설7급 최인철(☎ 758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② (생략)</p> <p>③ 수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p>

※ 업무담당(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기술7급 남선영(☎ 8142)

## 관계법령

###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

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3.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 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 ⑧ (생략)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7. 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략)

###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0.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1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 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13.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4.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5.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 례안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16.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17.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50호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각 규칙 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 정비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기획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praise34@korea.kr

## 6. 기타사항

「지바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제104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29조와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인수인계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4조부터 제68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다만, 강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효문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p> <p>-----</p> <p>-----</p> <p>-----</p> <p>-----</p> <p>-----</p> <p>-----</p> <p>-----</p>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 7102)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제104조제1항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9조와 제117조제1항----- ----- ----- ----- ----- ----- ----- -----.</p>

※ 업무담당(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 7102)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업무담당(담당자) : 총무과 행정7급 이수진(☎ 7203)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4조부터 제68조----- ----- ----- ----- ----- ----- ----- ----- -----.</p>

※ 업무담당(담당자) : 총무과 행정7급 이수진(☎ 7203)

## 관계법령

###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자치법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2.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결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재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